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2 ~ 68
----------	-----------

제출연월일	2012. 9. 10.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2004. 01. 07. 이후 상수도 요금의 동결로 인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종을 조정하여 군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요금 인상 및 업종 조정에 따른 별표 조정(안 별표 2, 3, 4)

(1) 급수 업종별 요율표(별표 2)

- 상수도 요금 인상율 : 12.6%(가정용 1단계:494원/m³ ⇒544원/m³)
- 급수 업종 축소 : 4종 ⇒ 3종

(2) 업종 구분표(별표 3)

- 업종 축소에 따른 별표 조정(대중탕용을 일반용으로 편입)

(3)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별표 4)

- 상수도 구경별 정액료 인상(13mm : 360원 ⇒750원 등)

나.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 제8조, 제46조)

- (1) 「수도법 시행령」 제30조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안 제8조)
- (2)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 ⇒ 「수도법」 제71조(안 제46조)

다. 표준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라. 미비된 조문의 개정 및 신설(안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41조)

- (1)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관련 근거조항 마련(안 제7조)
- (2) 동파계량기 교체 시 계량기 대금 납부주체 신설(안 제11조제1항제1호)
- (3) 급수표지 별지 서식 지정(안 제41조)

마. 옥내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안 제37조)

- 감면기간 관련 단서조항 신설 : 최대 3개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되었음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2.6.14. ~ 2012.7.04.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전·그 밖의”를 “수도꼭지·그 밖에”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다음의 4종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구조변경”을 “구경변경”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를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도법 시행령」 제30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 ②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 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사용자 등”을 “상수도사용자 등”으로 한다.

제3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제1항 중 “급수표지”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표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6조 중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한다.

별표 2·3·4,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u>수도전· 그 밖의</u>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p> <p>2. ~ 10.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 ----- ----- ----- <u>수도꼭지· 그 밖에</u>----- -----</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u>다음의 4종으로</u> 구분한다.</p> <p>1. (생략)</p> <p>2. 개조공사 : 급수관 <u>구조변경</u>,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p> <p>3 ~ 4. (생략)</p>	<p>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 ----- <u>다음 각 호와 같이</u>-----</p> <p>1. (현행과 같음)</p> <p>2.----- ----- <u>구경변경</u>-----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생략)</p> <p>④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u>흡수정 설치</u>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u>-----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p> <p>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생략)</p> <p>1 ~ 2. (생략)</p> <p>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u>수도법 시행령</u>」 제30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8조(공사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 <u>「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u>-----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p> <p>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p> <p>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④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p>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p> <p>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급수공사비를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한다.</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사비용은 군이 부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 2.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포함)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할 경우(다만, 급수시작 후 개인별로 급수 신청할 경우는 제외) <p>②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p> <p>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상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p> <p>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상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상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p> <p>⑤ 군수는 설치된 상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1. ~ 2. (생략) 3.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경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경우</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11조제5항----- -----</p>
<p>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생략) ②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 ④ (생략)</p>	<p>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수도사용자 등----- -----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④ (생략) ⑤ 제4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41조(급수표지) ① 상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확하게 적은 급수 표지를 발급한다. ② (생략)</p>	<p>제41조(급수표지) ① -----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표지----- ----- ② (현행과 같음)</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2. (생략) 3.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 1건당 3만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② (생략)</p>	<p>제43조(포상금 지급) ① ----- -----사람----- -----범위에서----- ----- 1. ~ 2. (현행과 같음) 3. -----사람----- ----- ② (현행과 같음)</p>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 및 제7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피자 부담금 산출기준) 「수도법」 제71조----- ----- ----- ----- -----</p>

[별표 2]

업종별 요율표(제27조 관련)

업종구분	사용단계별(m ³)	m ³ 당 단가 (원)
가정용	1 ~ 20	544
	21 ~ 30	737
	31이상	963
일반용	1 ~ 30	668
	31 ~ 50	835
	51 ~ 100	974
	101 ~ 300	1,115
	301이상	1,254
산업용	1m ³ 당	652

[별표 3]

업종구분표(제28조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1.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 인장업, 행정서사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10㎡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일반 대중 목욕장업 포함)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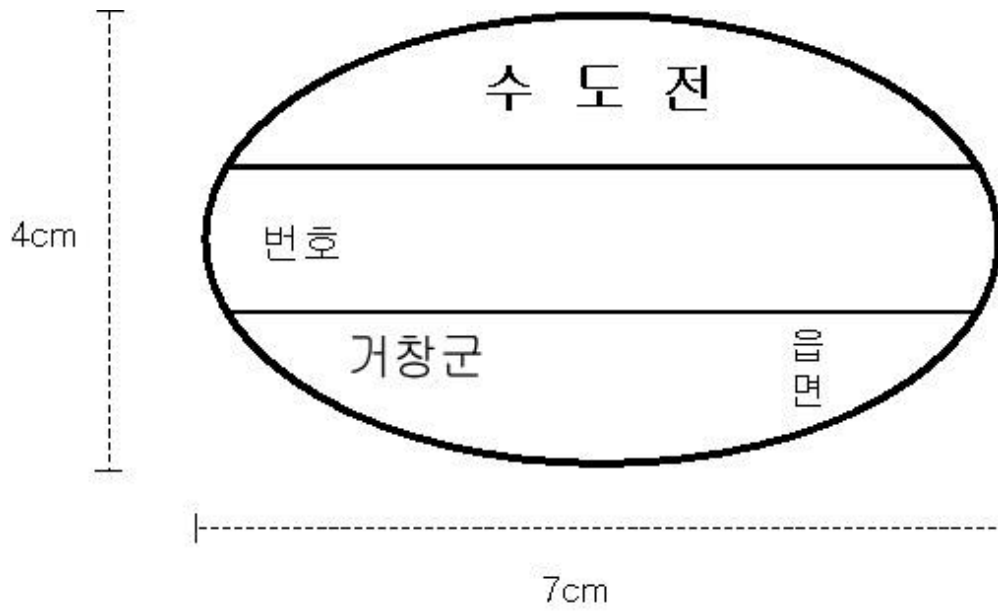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7조 및 제33조 관련)

계량기 구경별	금 액	비 고
13mm	750원	
20 "	2,110원	
25 "	3,390원	
32 "	6,040원	
40 "	10,190원	
50 "	15,630원	
75 "	37,910원	
100 "	64,640원	
150 "	140,840원	

[별지 제2호서식]

백색 바탕 황색 글씨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일 교